#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5 발의연월일: 2024. 6. 4.

발 의 자: 강민국·박성민·최형두

김태호 · 서일준 · 박덕흠

김도읍 • 이인선 • 윤한홍

서천호 • 박대출 • 이상휘

조승환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3개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하여는 100%를, 그 다음 2개과세연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 21조의36 신설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 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의12(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의1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제121조의36(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 홍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우주개발 진홍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홍지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37에서 "투자진홍지구"라 한다)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하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 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조에서 "감면한도"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사업장"이라 한다)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00만원
-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을 먼저 적용한후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⑦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제121조의37(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 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6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 1. 「우주개발 진흥법」 제23조의3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해당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3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5장의12 우주산업클러스터 지
	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
	원을 위한 조세특례
<u>&lt;신 설&gt;</u>	제121조의36(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우주개
	발 진흥법」 제23조의2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이
	조 및 제121조의37에서 "투자
	<u>진흥지구"라 한다)에 2027년 1</u>
	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항공우주산업, 우주개발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
	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그 사
	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
	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개시일부터 3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 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② 제1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감면받는 법인세 또는 소 득세의 총합계액은 제1호와 제 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한 도(이하 이 조에서 "감면한도" 라 한다)로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 계액의 100분의 50
- 2.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진흥지
  구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
  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00
  만원
- ③ 제1항에 따라 각 과세연도에 감면받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하여 감면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제2항제1호의 금액

을 먼저 적용한 후 같은 항 제 2호의 금액을 적용한다.

④ 제2항제2호를 적용받아 소 등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 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 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감면대 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 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 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 부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의2제8항의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 1.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경우. 다만, 법인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감면대상사업장을 투자진흥지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경우

①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1조의37(우주산업클러스터 지역과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 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1조의36에 따라 감면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추징한다.

<신 설>

- 1. 「우주개발진흥법」 제23조의 3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지정이 해제된 경우
- 2. 해당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추징할 세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